

大田直轄市青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422
----------	-----

提出年月日 : '94. 5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大田直轄市 青少年自立支援基金의 運營管理를 위하여 基金出納 公務員의 官職을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으로 指定하였으나, 地方財政法 施行令(第156條)의 改正으로 基金出納命令官을 基金運用官으로 基金出納公務員을 基金出納員으로 改正하고자 함.

2. 主要骨子

青少年自立支援 基金의 運營管理를 위한 基金出納公務員의 官職을 基金出納命令官은 基金運用官으로, 基金出納公務員은 基金出納員으로 改正하고자 함. (案 第7條)

3. 參考事項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156條(基金의 運用管理) ① 地方自治團體의長은 法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을 效律的으로 運用하기 위하여 基金의 種類別로 基金運用官과 基金出納員을 두어야 한다.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국장이, 기금출납원은 청소년계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관리) ①~③ (생략)		제7조(기금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u>기금출납</u>		④ <u>기금운용관</u>		
명령관은 가정복지국장이, <u>기금출납공무원</u>	 <u>기금출납원</u>		
은 청소년계장이 된다.			

大田直轄市青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4. 5. 23

文教社會 委員會

I. 審 查 經 過

1.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4. 5. 9 大田直轄市長
2. 回附日字 : 1994. 5. 9
3. 上程日字 : 第3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 3 次 文教社會 委員會 ('94. 5. 23)
上程, 審查, 議決

II.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 : 家庭福祉局長)

1. 提 案 理 由

大田直轄市 育少年 自立支援基金의 運營管理를 위하여 基金 出納 公務員의 官職을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으로 指定하였

으나, 地方財政法施行令 (第156條)의 改正으로 基金出納命令官을 基金運用官으로 基金出納公務員을 基金出納員으로 改正하고자 함.

2. 主要骨子

青少年自立支援 基金의 運營管理를 위한 基金出納公務員의 官職을 基金出納命令官은 基金運用官으로, 基金出納公務員은 基金出納員으로 改正하고자 함. (案 第7條)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要旨 (專門委員 : 金鎮鎬)

- . 本 案件은 不遇青少年들의 就學, 職業訓練등 自立事業을 效率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設置運營되고 있는 「大田直轄市青少年

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의 內容中 會計官職의 名稱을 一部 變更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 . 基金의 運用및 出納事務등 會計業務의 擔當을 위하여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 公務員」을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關

聯上位법인 地方財政法施行令이 一部 改正됨에 따라 이를 「基金運用官」과 「基金出納員」으로 會計官職의 名稱을 變更하려는 內容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

Ⅳ. 討 論 要 旨 : 없 음

Ⅴ.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없 음

VI. 審 查 結 果 : 原 案 大 로 可 決

VII.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